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 건

의안 번호	2013~
----------	-------

제출일자 : 2013. 06.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의견청취 이유

○ 거창사과·딸기는 거창군 농업소득의 32.9%, 10.34%를 각각 차지 할 만큼 지역의 중요한 소득원이며, 사과·딸기 주산단지로 우수한 재배환경 및 기술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거창사과 테마파크, 경남사과이용연구소, 딸기체험농장 등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FTA발효 후 과수와 채소특작의 경우 15년 동안 매년 70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어 농가뿐만 아니라 거창군 지역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타 지역보다 빠른 노령화 현상으로 농업에 새로운 위기의식이 고조 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를 지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적용 및 특화사업추진을 통하여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어 거창사과·딸기 명품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 중소기업청에 특구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로 거창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관련법규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2항

3. 거창사과·딸기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설명자료 : 따로붙임

○ 거창사과·딸기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서

【붙임】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거창사과·딸기특구지정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적용 및 특화사업추진을 통하여 사과·딸기 재배환경개선과 인프라 활용한 지역명소마케팅으로 명품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

□ 거창사과딸기 특구 지정 신청계획

1. 특구의 명칭 : 거창 사과·딸기 산업 특구
2. 특구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9번지 외 8,104필지
3. 특구의 면적 : 15,778,213m²
4. 특구지정의 필요성

가) 거창사과·딸기는 거창군 농업소득의 32.9%, 10.34%를 각각 차지 할 만큼 지역의 중요한 소득원이며, 사과·딸기 주산단지로서 우수한 재배환경 및 전국 탐프루트, 탐과채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할 만큼 우수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2012년 기준)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연매출액	수상
사과	1,509ha	2,7658톤	42,016백만원	2008~9년 탐프루트 홍로
딸기	158ha	6,399톤	13,209백만원	2012년 탐과채

나) 또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거창사과테마파크, 경남사과이용연구소, 딸기체험농장 등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FTA발효 후 과수와 채소특작의 경우 15년 동안 매년 70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어 농가뿐만 아니라 거창군 지

역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타 지역보다 빠른 노령화 현상으로 농업에 새로운 위기의식이 고조 되고 있으며 수도권 마케팅 부족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 라)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를 지정을 통하여 차별화된 규제적용, 생산시설 확충, 교육을 통한 상향식 기술평준화, 홍보강화, 기존 관련시설(유통,연구,관광기반)을 연계한 새로운 전략산업을 육성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5. 특화사업계획 및 규제특례사항

추진 전략	추진 과제	특화사업명	사업기간
전체			13~17(5년)
사과·딸기의 부가가치 향상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고품질 생산단지 확충	13~17(5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3~17(5년)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생산 지원	13~17(5년)
		농가 일속부족 해결 지원	13~17(5년)
		농작물 재해보험 실시	12~17년(5년)
	가공분야 활성화	사과생과일주스 연구·생산 지원	13~17(5년)
		가조 음식특화거리 조성·운영	13~15(3년)
거창 사과·딸기의 명품화	유통기반 구축	산지유통센터(APC) 운영	13~17(5년)
		로컬푸드 활성화	13~17(5년)
		직거래 활성화	13~17(5년)
	명품 브랜드 육성	사과이용연구소 운영	13~17(5년)
		딸기 해외수출 활성화	13~17(5년)
		공동브랜드 이용 활성화	13~17(5년)
		지리적표시제 등록	14~17(4년)
		스토리텔링 발굴 및 활용	14~17(4년)
		농업회의소 운영	13~17(5년)
관광 명소화	명소 마케팅 추진	거창 사과테마파크 운영	13~17(5년)
		딸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13~17(5년)
		사과·딸기 축제 활성화	13~17(5년)
		귀농·귀촌인 유치	13~17(5년)
		사과·딸기 홍보간판 및 조형물 설치	14~15(2년)

6. 특화사업자

- 사업자 : 거창군수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

7. 특구의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8.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구분	규제특례사항	필요성	적용범위	세부사업명
일반 규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2조)	• 사과마라톤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	• 거창스포츠파크 및 사과마라톤대회 코스 일대	• 사과·딸기 축제 활성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3조)	• 특구의 효과적인 홍보 를 위해 광고물의 설 치기준, 종류, 모양 등 에 관하여 조례로 달 리 정함	• 사과·딸기 홍보용 지주이용간판 설치 • 가조음식특화거리 홍보용 지주이용간판 설치	• 사과·딸기 홍보간판 및 조형물 설치
	「농지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6조)	•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사과·딸기 재배시 농지의 임대 및 사용대	•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도로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33조)	•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점용을 일시적으로 허용	• 거창 스포츠파크 주변 및 축제 행사장	• 사과·딸기 축제 활성화
	「농산물품질관리법」 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36조의5)	• 거창 사과·딸기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우선심사	• 거창 사과·딸기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신청	• 지리적표시제 등록
	「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36조의8)	• 가공식품 등 사과와 관련된 특허신청에 대한 우선심사	• 사과이용연구소의 사과가공식품 개발	• 사과이용연구소 운영
권한 이양 규제 특례	「식품위생법」 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43조)	• 사과·딸기를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시 식품의 표시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사과 생과일주스 등 사과·딸기를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	• 사과 생과일주스 연구·생산지원

9. 재원조달 방법

- 총사업비 : 51,841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 2017(5년간)
- 재원별 투자계획

구분	합계	연도별예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사업비	계	51,841	8,623	9,314	10,584	11,400	11,921
	국비	4,709	1,001	683	869	1,013	1,143
	도비	8,806	1,378	1,632	1,812	1,942	2,041
	군비	28,846	4,916	5,518	6,007	6,121	6,285
	민자	9,480	1,328	1,481	1,896	2,324	2,452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계	27,501	3,308	4,528	5,757	6,704	7,205
	국비	3,490	578	460	646	838	968
	도비	3,873	369	665	835	957	1,046
	군비	14,717	1,870	2,669	3,195	3,415	3,569
	민자	5,421	491	734	1,081	1,494	1,622
가공분야 활성화	계	1,905	1,070	240	195	200	200
	국비	250	250	-	-	-	-
	도비	43	43	-	-	-	-
	군비	1,237	627	190	140	140	140
	민자	375	150	50	55	60	60
유통기반 구축	계	4,130	780	780	850	855	865
	국비	-	-	-	-	-	-
	도비	-	-	-	-	-	-
	군비	980	180	180	200	205	215
	민자	3,150	600	600	650	650	650
명품 브랜드 육성	계	10,174	1,900	2,101	2,161	2,001	2,011
	국비	600	100	150	150	100	100
	도비	4,739	939	940	950	950	960
	군비	4,545	821	961	1,001	881	881
	민자	290	40	50	60	70	70
명소마케팅 추진	계	8,131	1,565	1,665	1,621	1,640	1,640
	국비	369	73	73	73	75	75
	도비	151	27	27	27	35	35
	군비	7,367	1,418	1,518	1,471	1,480	1,480
	민자	244	47	47	50	50	50

10.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 : 해당없음

11.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 2013 ~ 2017(5년간)